

저출산과 독일의 다문화가족정책에 대한 연구*



김태원
(대구카톨릭대학교 연구교수)
(taewonart@gmail.com)



I. 서론

19세기 무렵부터 독일에서는 산업화과정에서 농촌 인구의 도시이주나 외국으로의 이민이 활성화되기 시작하였다. 그로 인해 농촌에서는 농업 인력의 수급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변국들로부터 저임금의 노동자들을 공급받기 시작하였다(뵈닝, 1996; 아벨라, 1996; 이진숙, 2005; 김선영, 2009; Boehning, 1972; Atabay, 1998; Bade, 2000). 이것이 독일에 외국인노동자와 다문화가족이 차츰 증가되기 시작한 초기배경이다. 이러한 노동력의 수입전통은 제2차 세계대전 후의 경제적 재건과정에서 조직화된 국가전

략을 통해 공고화되었고, 그를 통해 독일의 저임금직종과 3D업종의 산업인력은 주로 외국인인과 다문화이주자들을 통해 확보되었으며, 그 결과로 독일내 외국인 노동자의 비율은 전체노동자의 10%선을 초과할 정도로 늘어나는(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약칭 BMFSFJ), 2000: 60)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외국인노동자들은 차츰 그들의 가족들을 동반이주시키기 시작하여 다문화이주자들의 규모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게 되었고, 이에 불안감을 느낀 독일정부는 결국 실패로 끝나기는 하였지만 1973년에 외국인 노동자의 모집중단조치를 시도하기도 하였다(장혜경·김혜경·오학수·이기영, 2003: 83; Nauck, 1988; BMFSFJ, 1994; Gerlach, 1996).

독일의 초기 외국인정책은 이처럼 경제적 성격이 강하게 내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독일은 1990년대부터 구 소련의 해체로 야기된 동구 공산권의 붕괴와 독일통일로 인한 단기적 경제활성화를 경험하면서 공산권으로부터 몰밀듯이 유입된 정치적 난민들과 독일출신인 동유럽 강제이주자들의 독일로의 귀환 그리고 동독인들의 서독으로의 이주로 인해 외국인들과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되었고(Powers, 1981), 그로 인해 이들을 위한 정책적 성격도 산업경제적 성격에서 정치사회적 성격으로 전환되기 시작하였다. 다문화 이주민들은 그들의 양적 증가에 걸맞게 독일 내에서 점차 사회적 관계망을 확장시켜 나가기 시작하였다(BMFSFJ, 2000: 78). 하지만 독일 내에서는 자국민들의 점차적 저출산 현상이 드러나고 독일은 인구 감소로 인한 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독일이 인구증대와 그를 통한 경제적 우위 점유라는 현실정치적 목표로부터 차츰 멀어지고 있다는 불안감을 제공하는 주요요인으로 작용하였고, 그로 인해 독일정부는 인구문제와 노동력 수급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다문화이주자들을 보는 시각을 전환해야한다는 요구에 직면하게 되었다(Ruerup & Sesselmeier, 1994). 이러한 맥락 속에서 시민당은 집권 이후에 국적법을 속인주의에서 벗어나 속지주의적 원칙으로 바꾸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독일인들과 동등하게 부여하는 다문화가족친화적인 정책을 모색하기에 이르렀다(이진숙, 2005: 231-233,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이는 독일 다문화가족정책의 본격적인 출발점이 되었다.

독일에서 위와 같이 다문화가족을 위한 사회통합적 정책의 토대가 구축되었지만, 그러나 이는 최근에 들어서 조금씩 흔들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유럽 각국들은 최근에 다문화정책의 실패를 선언하고 있다. 최근에 독일에서는 장기적인 경기침체현상 속에서 줄어들고 있는 복지 파이를 함께 나누어야할 대상이 되고 있는 이민자들을 실업의 원인으로 매도하는 배타적 정서가 확산되고 있다. 한 조사에서는 독일인 중 30% 이상이 “독일이 외국인으로 들끓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고, 보수집권당의 양

* 이 논문은 2010년 한국연구재단 대학중점연구소 지원사업(과제번호: NRF-2010-413-B00023)에 의해 지원된 것임.

켈라 메르켈(Angela Merkel) 독일수상은 2010년 10월 16일에 기민당(CDU)의 한 집회에서 “(이민자 정착과 관련하여) 우리가 단순히 같이 살면서 서로 행복하면 된다는 식의 다문화적 접근을 취해왔지만 이것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말했다. 메르켈 수상은 “1960년대 초부터 우리는 외국인 근로자를 불러들였고 지금 그들이 독일 땅에 살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계속 머물지 않고 언젠가 떠날 것’으로 여겼지만, 이는 스스로를 기만한 것이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다문화 사회를 구축해 공존하지는 그 접근법은 실패했다. 완전히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독일 수상의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독일인들이 최근에 외국인들에 대해 동화 없이 혜택만 누리려는 존재라는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있음을 대변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독일연방 중앙은행(Deutsche Bank)의 이사도 “국가에 의존해 먹고살면서도 이 나라를 부정하고, 자녀교육에 신경 쓰지도 않으면서 끝없이 ‘머리에 히잡 쓰는 아이’를 낳는 사람들을 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터키인들은 높은 출산율로 독일을 점령하고 있다.”라고 말하였다. 실제로 독일에서는 터키인들이 독일어를 배우거나 독일문화에 적응하려고 하지 않고, 독일인이라기보다 독일에 있는 터키인의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으로 평가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다.

이상과 같은 다문화이주민들에 대한 최근의 정치사회적 관점의 변화는 아마 앞으로 사회정책에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독일 다문화 가족정책은 매우 관대한 양상을 보인다. 그 이유는 앞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저출산 문제라는 현실적 장애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독일의 가족정책이 독일인들의 출산양태를 변화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독일인들의 저출산 현상은 쉽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데, 현재 독일의 출산구조는 다문화이주민가족들의 다산현상에 의존하는 바가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앞으로 독일인구의 감소가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문화가족들이라도 출산을 부추기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현실적 판단은 다문화친화적인 출산장려정책의 경로를 되돌려 놓기 어려울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독일내의 저출산 문제와 가족문제 그리고 그와 관련된 다문화가족정책이 어떠한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에 연구목적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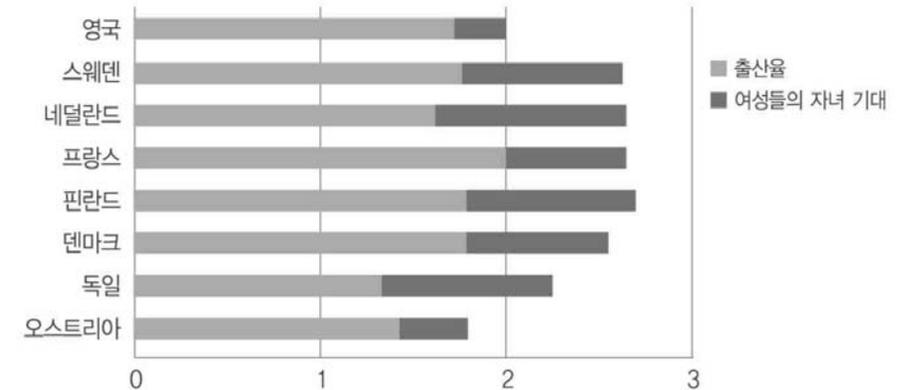
II. 저출산과 다문화가족에 대한 논의

1. 저출산 문제의 심화

서구에서는 제2차 세계대전 후에 군인들이 가정으로 복귀하게 되고 국가재건으로 인한 경기활성화에 기인하는 베이비붐(baby boom)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는 독일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베이비붐은 폭발적인 출산증가를 가져 왔다. 하지만 이는 오래 지속되지

않았다.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와 교육수준의 향상 그리고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출산율이 점진적으로 감소되는 현상을 야기하여 이미 198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는 사회의 주요이슈로 부상되었다. 실제로 독일여성들은 타 유럽국가의 여성들과 비교해 보면 최근까지도 희망하는 자녀수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실제 출산율도 매우 낮다.

〈그림 1〉 자녀출산 기대와 출산율의 국제 비교(2006)



출처 : Euromaster 2006, Eurostat 2006.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Berlin, p. 13에서 재구성.

1999년(독일인구 8,200만명)을 기준으로 하여 인구추계를 한 자료를 보면 순수 독일인구는 2050년에 72%(5,900만명)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되어 독일에서 저출산문제는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결부된 주요관심사가 되었다(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95).

아래의 표는 약 10년 정도의 유럽 각국의 출산율 추이에 관한 자료인데, 이 표를 보면 유럽연합의 평균 출산율은 2002년(1.45명)부터 2007년(1.55명)에 이르기까지 약 0.1명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프랑스와 북유럽의 경우에는 오히려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율이 상승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독일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출산율이 거의 변화되지 않고 있음을 볼 수 있고, 그 수준은 유럽연합에서 가장 하위수준에 머물고 있음이 드러난다.

독일의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는 것에 대한 원인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한 답으로는 우선 독일 특유의 정치적 역사성에서 그 원인을 지목해 볼 수 있다. 독일은 저출산이 심화되기 시작한 1980년대 후반까지도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은 시행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출산장려정책은 2차대전 전후에 나찌(Nationalsozialismus)정부가 주도한 왜곡된 인구증가정책에 대한 향수로 비추어질 수 있다는 암묵적 동조와 출산장려정책이 수반했던 인종

〈표 1〉 유럽각국의 출산율 비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유럽연합	-	-	-	-	-	1,45	1,47	1,5	1,51	1,54	1,55	-
벨기에	1,6	1,6	1,62	-	-	-	1,66	1,72	1,76	1,8	-	-
덴마크	1,75	1,72	1,73	1,77	1,74	1,72	1,76	1,78	1,8	1,85	1,84	1,89
독일	-	-	-	1,38	1,35	1,34	1,34	1,36	1,34	1,33	1,37	1,38
에스토니아	1,32	1,28	1,32	1,38	1,34	1,37	1,37	1,47	1,5	1,55	1,63	1,65
아일랜드	1,93	1,94	1,9	1,89	1,94	1,97	1,96	1,94	1,87	1,93	2,01	2,1
스페인	1,18	1,16	1,19	1,23	1,24	1,26	1,31	1,33	1,35	1,38	1,4	1,46
프랑스	-	1,78	1,81	1,89	1,9	1,88	1,89	1,92	1,94	2	1,98	2
이탈리아	1,21	1,21	1,23	1,26	1,25	1,27	1,29	1,33	1,32	1,35	1,37	-
헝가리	1,37	1,32	1,28	1,32	1,31	1,3	1,27	1,28	1,31	1,34	1,32	1,35
네덜란드	1,56	1,63	1,65	1,72	1,71	1,73	1,75	1,72	1,71	1,72	1,72	1,77
오스트리아	1,39	1,37	1,34	1,36	1,33	1,39	1,38	1,42	1,41	1,41	1,38	1,41
폴란드	1,51	1,44	1,37	1,35	1,31	1,25	1,22	1,23	1,24	1,27	1,31	1,39
핀란드	1,75	1,7	1,73	1,73	1,73	1,72	1,76	1,8	1,8	1,84	1,83	1,85
스웨덴	1,52	1,5	1,5	1,54	1,57	1,65	1,71	1,75	1,77	1,85	1,88	1,91
영국	1,72	1,71	1,68	1,64	1,63	1,64	1,71	1,76	1,78	1,84	1,9	-
노르웨이	1,86	1,81	1,85	1,85	1,78	1,75	1,8	1,83	1,84	1,9	1,9	1,96

출처 : Eurostat(2008).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Berlin, p. 8에서 재구성.

주의적 폐쇄에 대해 전세계적인 비판이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은 국가 정책에서 금기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둘째로는 외국인 노동력 모집정책에 의해 이주해 오기 시작한 외국인 노동자가족들은 독일인가족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출산경향을 보였고, 이로 인해 순수 독일인가족의 출산율은 급격히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출산율은 1990년대부터 약 1.4명 정도를 유지하였기 때문에,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지 못했었기 때문이다(이진숙, 2000; Nauck, 2000; BMFSFJ, 2004; EFMS, 2002; Haupt, 2002). 그리고 셋째로는 출산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첫 자녀의 임신연령이 낮을수록 유리한데, 독일의 경우에는 아래의 표에서도 나타나듯이 여타의 유럽국가들에서 보다 더 첫 자녀임신연령이 높아서 이것이 바로 출산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다.

2. 독일내 다문화이주와 다문화가족의 양상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해 보면 출산력이 강한 외국인가족들은 더욱 늘어날 것인데, 한 분석결과를 보면 1999년에 730만 명에 불과했던 독일내 외국인들은 2050년에는 1,600만 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이진숙, 2005: 234;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95).

〈표 2〉 첫 자녀임신 평균 연령

국가 구분	2005
오스트리아	27,2
포르투갈	27,4
벨기에	27,4
노르웨이	27,7
핀란드	27,9
덴마크	28,4
그리스	28,5
아일랜드	28,5
프랑스	28,5
스웨덴	28,7
이탈리아	28,7
네덜란드	28,9
룩셈부르크	29,0
독일	29,1
스페인	29,3
영국	29,8

출처 : OECD Family Database(2005).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Berlin, p. 11에서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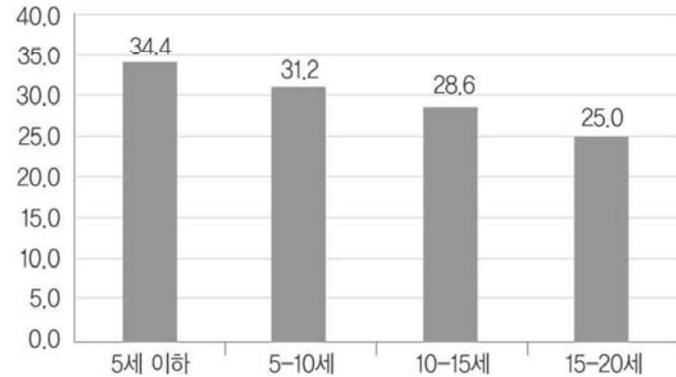
독일에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다문화이주민들은 다음과 같은 5그룹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다문화이주민이란 우선 국내외의 어느 곳이든 태어난 곳과 상관없이 외국인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인구, 둘째, 독일인이라면 과거에 동구로의 강제이주자였거나 현 국적에 상관없이 이주를 해 온 사람, 셋째, 독일 내에서 태어났지만 시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들, 넷째, 독일 내에서 태어나 독일 국적을 소유하고 있지만 부모 중 한 사람이 이주 배경을 지닌 사람, 다섯째, 2000년 이후에 출생한 아동인데 그 아동의 부모 중 한 쪽만 독일 국적이거나, 외국국적을 가지고 독일에서 태어났고 외국인 부모를 둔 아동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 80-92)로 구분될 수 있다. 이를 볼 때 독일은 다문화이주민을 매우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일의 다문화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독일의 전체인구 중에서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인구는 총 1560만 명인데, 이렇게 보면 독일인 중 거의 5명 중에 1명은 이주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1560만명 중 약 절반이 넘는 53%는 독일 국적을 소지하고 있고, 나머지만 43%는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이주사적 측면에 따라 이주민들을 구분해 보면 남녀이주민 중 절대다수인 1,060만명은 타국에서 출생한 뒤 독일로 이주해온 이주 1세대에 속하고, 나머지만 490만 명은 그 반대로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 80).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이주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연령별로 비교해 보면 다문화가족 내의 아동들은 대체로 어린 나이의 아동이 다수를 차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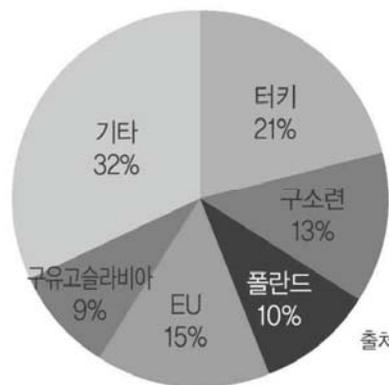
〈그림 2〉 이주배경을 가진 어린이와 청소년의 연령별 비율(%)



출처 : Mikrozensus 2008, Statistisches Bundesamt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 Familien Report 2010. Leistungen, Wirkungen, Trends, Berlin Zukunft für Familie. 2010. Berlin. p. 81에서 재구성.

다문화이주민들의 출신국들을 살펴보면 이주민들은 주로 터어키(22%), 서유럽과 남유럽(20%), 동유럽(18%)에서 이주해 오고 있음이 드러난다. 그리고 이에 따라 다문화이동들의 출신국도 이와 유사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그림 3〉 출신국별 18세 이하 자녀를 가진 가족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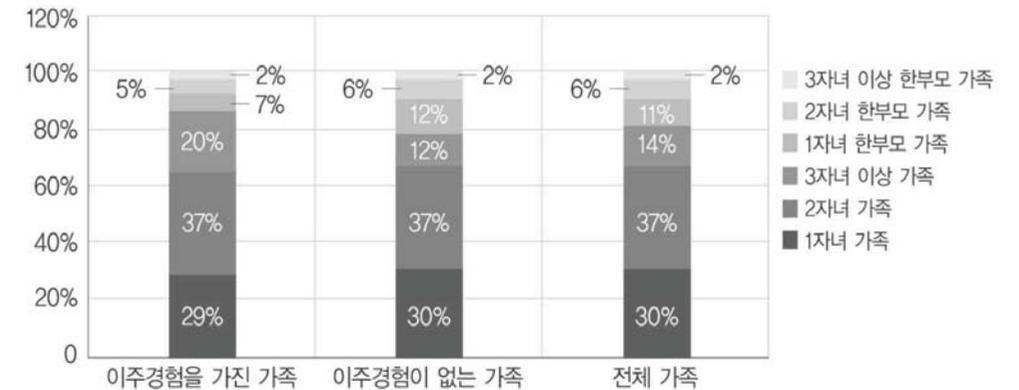
출처 : BMFSFJ 2010b, Datenbasis: Sonderauswertung Mikrozensus 2009.

가족상황을 살펴보면 독일 내에서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이주 배경을 가진 가구라고 할 수 있고, 그 중 한 자녀 가구는 전체 중 25%, 두 자녀 또는 두 자녀 이상 가구는 약 30%를

차지한다. 다문화가족의 가구 당 평균 자녀수는 1.7명으로, 이는 독일 전체 가구의 평균 자녀수인 1.6명보다는 조금 높은 편이다. 또한 아직 어린 연령의 자녀가 있는 전체 가족들 내에서는 다문화가족의 비중이 크게 나타나고 있어서 5세 이하자녀를 가진 가구들을 보면 세 가구 중 한 가구 이상은 이주 배경을 가진 가구임이 드러난다. 그리고 5-10세 이하 아동이 있는 다문화가구는 31%이고, 10-15세는 29%, 15-20세는 25%로, 아동의 연령이 높을수록 다문화양상은 감소된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 81).

다문화가족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다문화가족은 이주배경이 없는 독일가족들과 비교해 볼 때 한부모 가족보다는 부모 모두가 존재하는 양친가족이 많고, 아동수에 있어서는 양친이 1이나 2자녀를 키우는 비중은 거의 유사하지만, 다문화가족은 3자녀이상인 경우가 상대적으로 많고, 이주배경이 없는 독일가족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한부모가족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보면 다문화가족들은 가족형태에 있어서 전통적인 유형을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출산율도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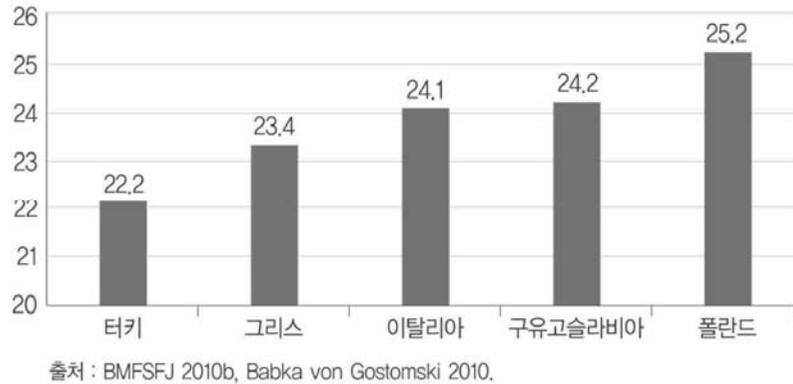
〈그림 4〉 가족유형과 자녀수에 따른 가족 현황



출처 : BMFSFJ 2010b, Datenbasis: Sonderauswertung Mikrozensus 2009.

또한 이주자들의 출신국에서의 첫 자녀 출산 연령을 보면 터어키가 22.2세로 가장 낮는데, 터어키출신의 다문화가족이 독일 내에서 가장 다수인 다문화집단이라고 할 때, 그리고 여성의 첫 자녀연령이 낮을수록 높은 출산수를 보인다는 일반화가 성립될 때, 독일내 터어키 가족들의 출산은 가장 활성화되어 있을 것이라는 유추가 가능하다.

〈그림 5〉 이주자의 모국에서의 첫 자녀 출산 연령



III. 다문화가족정책의 내용 분석

1.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독일에서 1998년에 집권 정당이 기존의 보수우파연합(CDU/CSU)에서 사민당(SPD)으로 교체된 것은 독일 다문화가족정책의 패러다임이 근본적으로 변화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기존의 보수연합정부(기민련과 기사련)는 다문화정책의 패러다임으로 동화정책을 고수하고, 외국인 정치범과 난민의 유입도 제한하려는 국수주의적이고 민족주의적인 전략을 취해 왔었다(UKZU, 2001). 그런 상황에서 사민당은 집권 후에 저출산과 노동력 수급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적자본론적 인식 하에 외국인 이주민들에 대한 정책을 통합주의적 방향으로 전환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맥락에서 사민당정부는 우선 연방내무부(Bundesinnenministerium)는 외국인의 이주전담부서인 이주위원회(Die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를 설치하여 다문화의 확산에 대한 대응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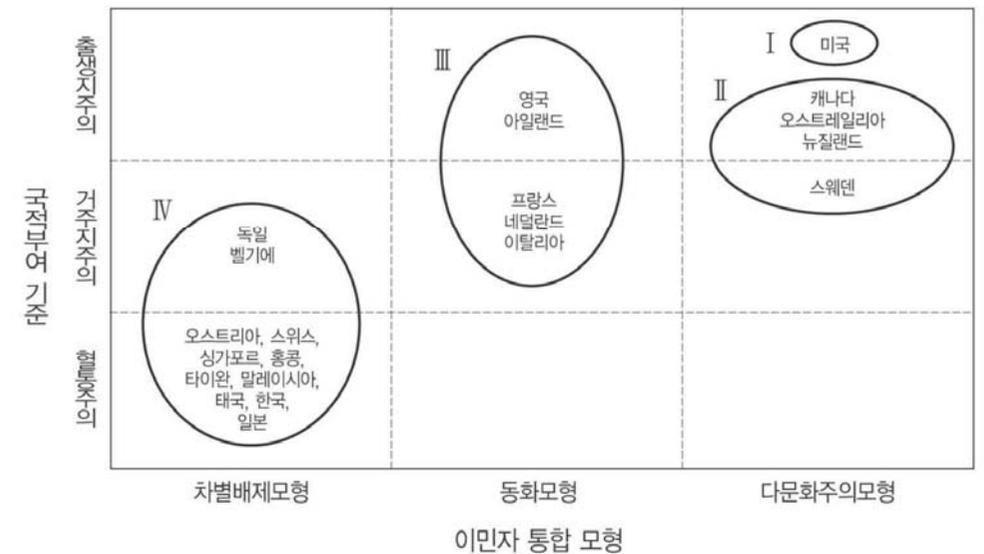
사민당의 정책적 패러다임의 전환 이후부터 현재까지 독일정부의 외국인이주에 대한 기본관점은 통합주의적 관점으로 유지되고 있다. 이는 즉, 외국인의 이주는 한 개인의 이주에서 끝나는 문제로만 이해되어서는 안되며, 개인의 이주가 그의 가족들의 추가이주와 연쇄이주 그리고 정착국에서의 새로운 가족의 형성으로 이어질 가능성까지 고려하는 다세대적 가족프로젝트(Familienprojekt)로 접근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통합이란 다문화이주민들이 독일인들과는 구분되는 특성들로 인해 사회경제적 측면이나 정치적 그리고 문화적 측면에서 독일인들에 비해 불평등한 위치에 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환경조

성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본다(장혜경 외, 2003: 93; BMFSFJ, 2000).

이상과 같은 정책지향성의 변화에 따라 가장 우선적으로 취해진 정책적 조치는 2000년에 이주정책의 토대를 형성하는 국적과 관련된 부분으로, 정부는 국적법을 민족과 혈통중심의 속인주의(ius sanguinis)에서 출생지역을 토대로 하는 속지주의적(ius soli) 원칙으로 개정하고, 2001년에 이주법(Zuwanderungsgesetz-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von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 Nov. 2001.)을 개정하여 이주제한을 많이 완화한 것이다. 이러한 법적 조치들을 통해 다문화이동들은 2000년 1월 1일부터 독일에서 태어났을 경우에 양친 중 한 쪽이 최소한 8년 이상을 독일에서 합법적으로 거주해 왔고, 영구적 체류허가나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독일의 국적을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다문화이주민들의 가족구성원들이 독일로 추가이주를 해 올 경우, 이에 대한 제한이 상당 부분 완화되었다(이진숙, 2005: 242-244).

변화된 독일의 다문화정책은 유형화를 통해 보면 아직도 북유럽을 비롯한 개방주의적인 국가들에 비해서는 차별과 배제적인 특성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6〉 독일의 다문화정책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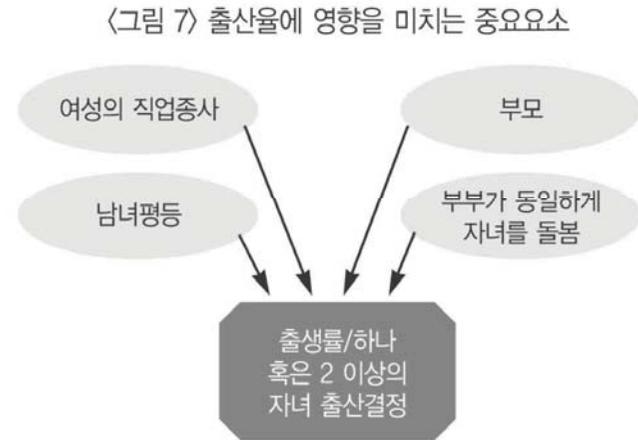


2. 다문화가족정책의 내용들

1) 출산율 제고를 위한 가족정책의 초점

일반적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을 살펴보면 우선 여성의 취업과 부모의

존재 여부, 평등한 분업 그리고 부부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를 언급해 볼 수 있다.



출처 :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p. 19.

출산에 대한 영향요인들 중 여성의 취업은 자녀의 출산에 당연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는 유럽 각국들이 모두 산업화과정 속에서 여성들의 취업이 활성화되면서 출산율이 저하되는 것을 경험한 사실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은 오늘날에 여성의 취업을 장려하여 이들이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면서, 이와 동시에 취업여성들을 위한 양육기반을 사회가 제공하여 출산율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BMFSFJ, 2003). 그리고 여성의 취업과 더불어 부모 모두의 적극적인 양육 참여는 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되는데, 그 이유는 만약 출산과 자녀 양육의 책임이 전통에 따라 여성에게만 가해진다면 취업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희망하는 여성들이 늘어난 현실에서 여성들의 선택은 당연히 출산을 줄이는 전략으로 귀결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출산 제고를 위해서는 여성의 취업장려와 부모 모두의 양육참여를 보장하는 조치들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Bussemaker & Kees van Kersbergen, 1994; BMFSFJ, 2008a).

오늘날 독일의 가족정책은 위와 같은 맥락으로 인해 주로 취업모 지원과 부모의 양육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러한 가족정책적 지원은 다문화가족에게도 동일하게 수혜되고 있다. 다음 절에서는 가족정책적 조치들 중에 취업과 양육지원영역을 중심으로 하여 각종 현금급여적 지원과 시간정책적, 인프라적 지원현황(Buttner & Lutz, 1990; Bertram, Roesler & Ehlert, 2005)에 대해 중요한 정책들을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2) 현금급여적 지원조치들

(1) 모성급여(Mutterschaftsleistungen)

임신기간 중으로 부터 산후 4달까지 여성근로자는 해고로부터 보호된다. 또한 법정 의료보험(Krankenversicherung)에 가입되어 있는 모든 임신여성들은 임신과정에서 예방차원의 검진, 치료, 조산모 요청, 의약품, 입원분만, 재가요양 및 가사도움이 보장된다. 그리고 모성보호 기간동안에 급여를 받지 못하는 여성들은 질병금고(Krankenkasse)로부터 1일당 13유로(Euro)의 모성수당(Mutterschaftsgeld)과 평균임금급여(Nettoarbeitsentgelt)의 차이에 따른 고용주추가급여(Arbeitsgeberzuschuss)를 수령할 수 있다. 이외는 다르게 법정 의료보험에 미가입 된 여성이나 비취업 임신여성들은 사회부조(Sozialhilfe)를 통한 모성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pp. 9-11).

(2) 양육수당(Erziehungsgeld)과 부모수당(Elterngeld)

2007년 1월 1일부터 기존의 연방양육수당법(Bundeserziehungsgeldgesetz)이 연방부모수당법과 부모시간법(Bundeselternzeit- und Elternzeitgesetz)으로 대체되어 운영되고 있다. 그로 인해 2007년 1월 1일 이전의 출생아들은 양육수당(Erziehungsgeld)을 지급받는다. 양육수당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고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취업중인 부나 모에게 아동이 만 2세가 될 때까지 매달 300유로의 정액급여나 아동이 만 1세가 될 때까지 매달 450유로의 가계예산 제공 중 급여를 선택가능하게 하고 있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17-18).

2007년 1월 1일 이후의 출생아들은 부모수당을 지급받는데, 부모수당은 출산전 평균임금(세후 임금액)의 67%수준으로 지급되는데, 매달 최대 1800유로 내에서 지급된다. 비취업 부모에게는 매달 최저 300유로가 지급된다. 그리고 저소득부모에게는 부모 중 한쪽의 세후 임금에 대해 1000유로 이내의 범위에서 100%까지 지급된다. 부모 중 일방은 최대 12개월까지 부모수당을 수급받을 수 있는데, 만약 12개월 이후에 부모가 임금급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2개월을 더 연장해서 수급받을 수 있다(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12-17)(이진숙, 2008에서 재인용).

(3) 아동수당(Kindergeld)과 아동세금공제(Steuerliche Freibeträge)

아동수당은 만 18세까지의 모든 아동(아동이 직업교육 중이면 25세까지 연장 지급)이 수급대상이며, 소득과 상관없이 균일하게 지급되고, 아동 수에 따라 1, 2, 3번째 아동은 매달 154유로, 4번째 이상의 아동은 매달 179유로로 차등 지급된다. 독일에서 모든 부모는 아동수당을 지급받는데, 아동수당은 세금공제로 대체수급이 가능하다. 아동을 위한 세금공제

는 0-25세까지(예외적인 경우에는 27세까지)의 아동에게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2160유로(부모 한 명당 1080유로)까지의 소득에 대해 세금공제를 하는 것이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20-21).

이 밖에도 취업중인 부모는 자녀의 출생 시부터 만 14세까지 그리고 장애아동에 대해서는 보육비의 2/3, 즉 한 자녀 당 연간 최대 4000유로까지 세금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비취업부모들은 3-6세 사이의 자녀에 대해 보육비용의 2/3, 한 자녀당 연간 최대 4000유로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34).

3) 시간정책적 지원조치들

(1) 부모시간(Elternzeit)

부모시간은 만 3세이하 아동의 취업부모에게 이들이 주당 30시간 미만으로 취업을 유지할 경우에 1년 동안 제공되는 휴직제도이다. 취업부모는 전체 부모시간 중 1년의 시간은 만 3세부터 만 8세 사이의 기간 사이로 연기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부모시간 이용기간에는 해고보호를 보장받는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18-19).

(2) 자녀간병휴가

임금노동자들은 병약한 자녀의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정되고, 가구 내에 돌봄인력이 본인 외에는 없을 경우에 의사의 진단서가 있고, 노동계약과 임금계약에 의해 명시되어 있으면 약 5일까지 유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자녀간병휴가는 한 자녀 당 그리고 부모 중 한 사람 당 최대 25일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36-37).

4) 시설인프라 지원조치

독일에서 모든 아동들은 만 3세부터 초등학교의 입학 전에 이르기까지 유치원을 다닐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 그리고 보육시설의 이용비용은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화되고 있는데, 저소득가족을 위해서는 청소년청(Jugendamt)이 보육시설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분을 부담해 준다(이진숙, 2008; 홍승아 외, 2008;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07: 33).

IV. 정책적 문제점

1. 저출산의 지속

앞의 장에서 볼 수 있었듯이 독일의 가족정책은 가족들에 대한 지원수준이 양적인 면에서나 질적인 면에서 타 국가들에 비해서 낮지 않은 수준이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의도하는 출산율의 향상이나 어머니들의 취업이 활성화되는 큰 성과들은 나타나지 않아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는 통계를 통해서도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선 여성취업률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해보면 유럽연합 회원국가들 중 독일은 여성전체의 취업률(73.3%)에서나 어머니들의 취업률(68.1%) 측면에서 가장 하위수준을 보이고 있다.

〈표 3〉 EU 15개국의 여성과 어머니 취업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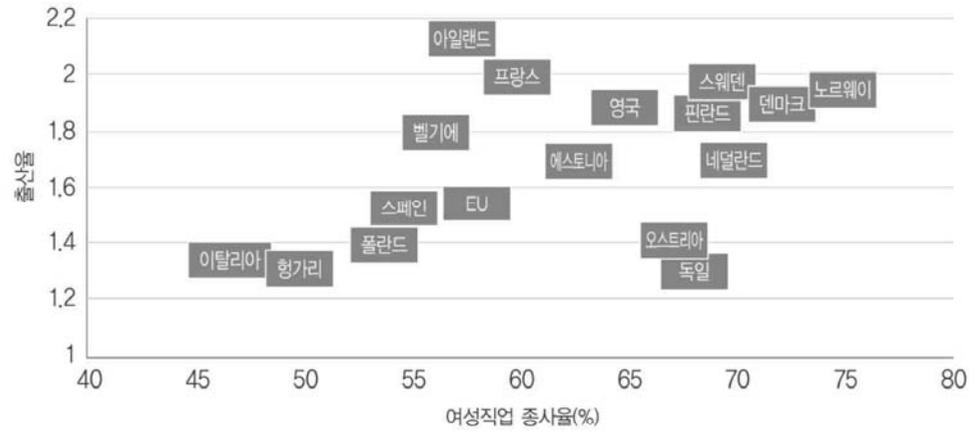
	여성취업률(25~49세)	어머니 취업률(16세이하아동)
스웨덴	79.8%	82.5%
덴마크	79.4%	76.5%
네덜란드	78.2%	75.7%
핀란드	78.7%	76.0%
포르투갈	76.5%	76.4%
오스트리아	76.1%	72.3%
프랑스	75.1%	72.8%
벨기에	74.1%	72.7%
독일	73.3%	68.1%
영국	72.1%	67.9%
룩셈부르크	71.5%	66.8%
아일랜드	69.5%	57.5%
스페인	65.7%	61.9%
그리스	61.6%	58.7%
이탈리아	58.9%	55.6%
OECD평균	69.5%	65.3%

출처 :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Berlin, p. 17.

그리고 출산율에 있어서도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연합 중 경제선진국들 중에서는 하위권을 형성하고 있다.

일반적인 전체에 의거해 본다면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데도 불구하고 출산율 역시 낮은 것에 대한 원인은 정책적인 결함에서 찾아보아야 할 것이다. 독일에서 12세 미만의 어린 자녀가 있는 전업주부들 중에서 약 70%라는 많은 여성들은 아이가 있어도 취업을 희망한다. 그런데 이들이 취업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이유는 보육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Shama, Steiner, 2008: 17). 이를 볼 때, 독일의 가족정책에서 현금지원적 조

〈그림 9〉 유럽의 여성취업률과 출산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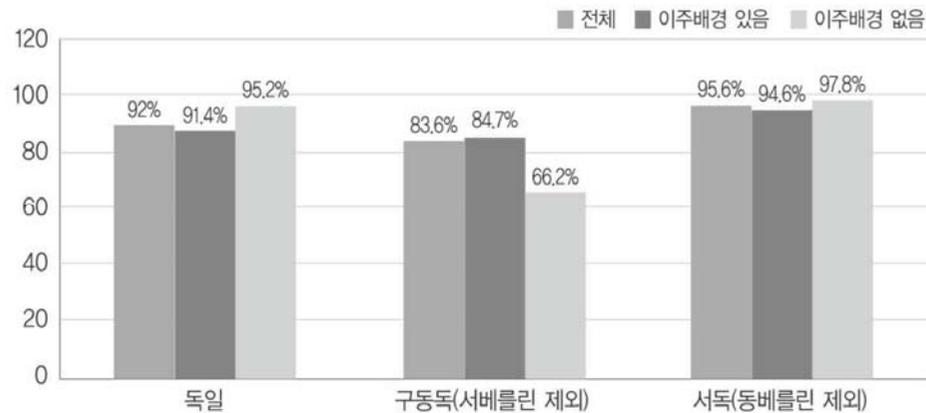


출처 : Eurostat(2009)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Berlin. p. 19에서 재구성.

치들은 매우 발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는 출산장려나 취업제고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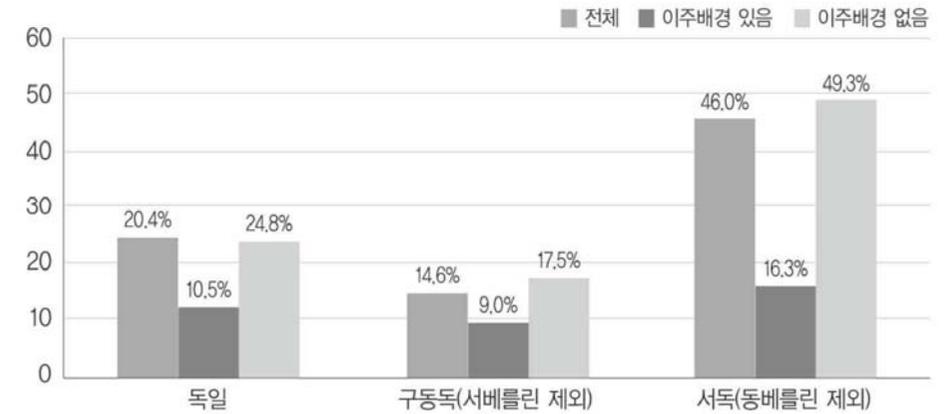
그렇다면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부모들은 아이를 낳고 키우기가 쉽지 않은 것에 대한 주원인으로 보육시설의 미비를 언급한다. 통계상으로 구서독지역에서는 3-6세미만 아동의 92%는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0〉 3-6세 아동의 주간보육시설 이용률(%)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2009)

〈그림 11〉 3세미만 아동의 주간보육시설 이용률(%) (2009)



출처 : Statistisches Bundesamt(2009)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 Familien Report 2010. Leistungen, Wirkungen, Trends, Berlin Zukunft für Familie. 2010. Berlin. p. 83에서 재구성.

하지만 3세 미만아동(20.4%)을 위한 시설서비스 이용실태는 3세 이상아동의 보육이용률에 비해서 매우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 표들에서 다문화가족의 보육이용실태에 주목해 보면, 지금까지는 다문화가족의 출산에 대한 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았지만 앞으로는 이들의 출산도 위축되는 부정적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가능해진다. 다문화가족의 아동들은 3세 이상(91.4%)이나 3세 미만(10.5%)의 경우에 모두가 독일가족의 시설이용에 비해서 이용률이 현저하게 낮은 상황임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치는 물론 구동독지역과 서독지역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구동독지역(베를린 제외)에서는 단지 0-3세의 이주배경을 가진 아동들의 9%가 주간아동보육시설에 다니는데 비해, 서독지역(베를린 제외)은 16%였다. 이는 서독의 경우 전체 3세 이하 아동의 2명 중 1명의 비율로 약 46%에 해당한다. 이로 볼 때 이주배경을 지닌 아동들의 주간보육시설 교육비율이 현저하게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양육의 어려움이 결과적으로는 다문화가족의 출산도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임은 자명하기 때문이다.

2. 다문화이주민들의 위축된 취업활동

노동시장으로의 통합은 각기 다른 삶을 영위하기 위한 물질적 전제조건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통합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선행연구들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주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구직행위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EU나 다른 서유럽 산업국가 출신의 이주자들의 가정은 이주경험을 가지지 않은 독일인들과 마찬가지로 그들과 비슷한 정도의 높은 구직률을 보였고, 이는 특

히 과거에 동구로 강제이주되었던 귀환자 가족들에게서 비슷한 현상을 보인다. 하지만 반면에 터키인들과 구 유고슬라비아에서 이주해 온 다문화 이주민들의 경우에는 그보다는 낮은 구직률을 보여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설문조사에 따르면 이주경험을 가진 어머니들은 일반 가족의 어머니보다 훨씬 더 직업을 갖고 싶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를 보면 이주경험을 가졌지만 직업을 가지지 못한 어머니들 중 약 63%는 직업을 가지기를 원한 반면에 전체 비취업 어머니들 중에서는 47%만이 취업을 원했다(BMFSFJ, 2010).

이주민들은 가족의 더 나은 생활을 위해서 종종 자신이 선호하는 것 이외의 다른 직업영역에서 일을 하기도 한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취업이 가족의 물질적 안정을 위해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이유 외에도 본인이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을 통해 이주사회에서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자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직업에서의 성공과 이민국으로의 통합이 이루어지려면 어학능력을 증명하는 것이 전제가 된다. 어학능력인정 여부는 이주민들의 출신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지만, 대체로 30% 정도의 이민자들은 사회조사자료인 SOEP(Sozio-oekonomisches Panel) 분석결과에 따르면 독일어를 잘 읽고 쓰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학능력의 부족이 이주민들의 취업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는 통계자료이다. 이주민들 중에서도 특히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언어가 직업을 구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독일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여성의 경우는 그렇지 못한 여성들에 비해 일자리를 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독일어 구사능력이 우수할 경우 55%의 여성이 일자리를 구했다면, 그렇지 못한 여성은 35%만이 일자리를 구했을 뿐이었다. 이러한 언어능력은 구직이라는 측면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어린 아이를 양육할 경우에도 어머니의 언어구사능력은 그의 자녀가 독일에서 사회적 기회를 얼마나 취득하는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이는 통계를 통해 실증되는데, 예를 들어 16-24세의 이주민들 중 이주경험을 가진 남·녀 학생들의 거의 절반은 같은 또래의 독일 학생들에 비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받는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그에 대한 이유로는 자신들이 독일 학생들에 비해 독일어 구사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 중 37%는 집에서 학교의 과제물을 부모가 제대로 가르쳐줄 수 없기 때문에 사회에서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없다고 믿고 있었다(BMFSFJ, 2010).

이상과 같은 취업관련 문제점들을 보았을 때 다문화가족정책은 특히 다문화이주부모들의 취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치들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정책적 제언

독일에서 다문화가족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이 시작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의 일이다. 하지만 그 변화는 아직 성과 면에서 크게 가시화되고 있지는 못하고 있어서 아쉽다. 독일사회에서 저출산문제가 심각한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고, 이에 대한 원인이 보육서비스의 부족과 여성들의 취업지원이 아직 미흡하기 때문이라면 다문화가족정책은 앞으로 보육과 취업지원에 초점을 두고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아무리 가족정책이 강화되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성과로 표출되지 않는다면 정책의 존재가치는 의미가 없다.

다문화가족들은 독일사회 내의 출산구조에서 중요한 자원이다. 따라서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들이 정책의 중요한 목표집단이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책을 통해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족들의 독일 내 적응을 위한 언어와 사회교육적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다문화가족들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사회에 통합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문화 이주여성들의 취업활동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다문화가족들을 위한 보육서비스를 강화하여, 다문화아동들을 위한 보육서비스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들은 언어문제나 문화적 차이로 인해, 그리고 경제적 이유로 인해 시설을 이용하는 비율이 낮은 데, 이는 다문화가족의 양육을 어렵게 하여 결국 출산율이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고, 자녀들이 성장한 후에도 빈곤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부작용도 수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두 가지의 핵심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독일의 저출산문제는 완화되기 어려울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선영. 2009. "한국과 독일의 다문화 비교: 다문화정책 환경과 정책 특징을 중심으로." 『한국정책연구』, Vol.9(1), pp. 175-194.
- 로저 뵈닝. 1996. "한시적 인력수입정책의 제현안과 이해관계의 조성." 박영범 · 로저 뵈닝 · 마늘로 아벨라 편.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 46-77.
- 마늘로 아벨라. 1996. "외국인력 수입정책의 국제적 추세와 고찰." 박영범 · 로저 뵈

닝·마늘로 아벨라 편. 『외국인력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pp. 78-118.

- 이진숙. 2000. “사회과학적 토의에 비추어진 독일의 가족제도와 가족정책: 가족보고서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12: pp. 93-122.
- _____. 2003. “슈뢰더정부의 중증장애인고용정책 분석.” 『한국사회복지학』53: pp. 155-178.
- _____. 2005. “사회통합과 외국인 가족복지정책: 독일 사민당 정부 하에서의 정책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57(2): pp. 231-252.
- _____. 2008. “독일의 일-가족 양립정책에 대한 연구 - 보육지원을 중심으로.” 『한독 사회과학논총』18(3): 165-190.
- 장혜경 외.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한국여성개발원.
- 홍승아 외. 2008.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및 한국의 정책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Atabay, Iihami. 1998. Zwischen Tradition und Assimilation. Die zweite Generation türkischer Migranten in der Bundesrepublik, Pfaffenweiler, Centaurus.
- Babka von Gostomski, Ch. 2010. Fortschritte der Integration. Zur Situation der fünf grössten in Deutschland lebenden Ausländergruppen. Im Auftrag des Bundesministeriums des Innern. 2010. Berlin
- Bade, Klaus J. 2000. Migration und Integration in Deutschland seit dem Zweiten Weltkrieg, Probleme-Erfolge-Perspektiven. Niedersächsische La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Hannover.
- Bertram, Hans, Wiebke Roesler, and Nancy Ehlert. 2005. “Zeit, Infrastruktur und Geld, Familienpolitik als Zukunftspolitik”. Aus Politik und Zeitgeschichte pp. 23-24; pp. 6-15.
- BMFSFJ. 2003. Agenda 2010: Vorteil Familie. Bundesministerin Renate Schmidt zum familienpolitischen Profil der Reformen der Bundesregierun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Böhning, W. R. 1972. “The Social and Occupational Apprenticeship of Mediterranean Migrant Workers in West Germany.” in The Demographic and Social Pattern of Emigration from the Southern European Countries, edited by M. Livi Bacci. Universita di Firenze.
- Bundesinstitut für Bevölkerungsforschung. 2000. Bevölkerung, Fakten-Trends-Ursachen-Erwartung.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1994. Fünfter Familienbericht. Familien und Familienpolitik im geeinten Deutschland-Zukunft des

Humanvermögens. Bundestagsdrucksache 12/7560, Bonn.

_____. 2000. Sechster Familienbericht-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Drucksache 14/4357.

_____. 2004. Migrationsfamilien-Daten und Fakten, Material für die Presse.

_____. 2005. Zukunft: Familie, Ergebnisse aus dem 7. Familienbericht, Berlin.

_____. 2007. Familien-Wegweiser, Staatliche Hilfen im Ueberblick, Berlin.

_____. 2008a. Familien brauchen Rahmenbedingungen, Ausgabe 9-12, Jg. 2007, Berlin.

_____. 2010. Ehe, Familie, Werte-Migrantinnen und Migranten in Deutschland, Ausgabe 24,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2010a. Familien Report 2010. Leistungen, Wirkungen, Trends, Berlin Zukunft für Familie. 2010, Berlin.
-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BMFSFJ]. 2010b. Dossier: Familien mit Migrationshintergrund, erstellt vom Zukunftsrat Familie im Auftrag des BMFSFJ. 2010, Berlin
- Bussemaker, J. and Kees van Kersbergen. 1994. “Gender and Welfare State: Some Theoretical Reflections”. Gendering Welfare State, edited by D. Sainsbury. London: Polity.
- Buttner, T. and W. Lutz. 1990. “Estimating Fertility Responses to Policy Measures in the German democratic republic”.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3).
- EFMS(Europäisches Forum für Migrationsstudien). 2002. Statistiken zur Migration und Integration von Migranten. Institut an der Universität Bamberg.
- Gerlach, Irene. 1996. Familie und staatliches Handeln, Ideologie und politische Praxis in Deutschland, Opladen.
- Hanna Steidle, Melanie Henkel.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2010, Berlin.
- Haupt, Peter. 2002. Integration von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 Ziele und Aufgaben von Familienpolitik, BMFSFJ: pp. 9-16.
- Nauck, Bernhard. 1988. Zwanzig Jahre Migranten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Stuttgart: Enke.

- _____. 2000. Familien ausländischer Herkunft in Deutschland, in: Diskurs - Studien zu Kindheit, Jugend, Familie und Gesellschaft 3: pp. 13-19.
- Powers, C. H. 1981. Power and Principles of Social Integration, Ann Arbor: University Microfilms International.
 - Ruerup, Bert, and Sandra Gruescu. 2003. Nachhaltige Familienpolitik im Interesse einer aktiven Bevoelkerungsentwicklung. Bundesministerium für Familie, Senioren, Frauen und Jugend.
 - Rürup, Bert and Werner Sesselmeier. 1994. "Zu den wichtigsten Auswirkungen von Einwanderung auf Arbeitsmarkt und Sozialversicherungen," in Forum Demographie und Politik, published by Hans Ulrich Klose, Vol.5. Bonn.
 - Statistisches Bundesamt. 2000. Bevölkerungsentwicklung Deutschlands bis zum Jahr 2050, Ergebnisse der 9. koordinierten Bevölkerungsvorausberechnung.
 - _____. 2000. Mikrozensus.
 - _____. 2000. Statistisches Jahrbuch.
 - Steidle, Hanna & Melanie Henkel. 2010. Wohlfahrtsstaatliche Einflussfaktoren auf die Geburtenrate in europäischen Ländern, Berlin.
 - UKZU(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uung). 2001. Zuwandeuung gestalten- Integration fördern, Zusammenfassung. Berlin.